##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무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7

발의연월일: 2020. 6. 17.

발 의 자:한무경・태영호・권명호

박덕흠ㆍ이 용ㆍ추경호

이종성 · 엄태영 · 임이자

김정재 · 서일준 · 김영식

金炳旭・박성중・이 영

김 웅ㆍ허은아ㆍ신워식

권성동 · 전주혜 · 윤창혁

윤주경 의원(2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대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나, 청년이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.

해외 창업을 하면 현지에서 우리 국적의 동포도 많이 고용하고, 또해외사업이 잘 되면 국내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음. 청년 해외 창업지원은 우리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. 이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(안 제4조의2제1항

제4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2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4의2.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창업촉진사업의 추진	제4조의2(창업촉진사업의 추진
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	등) ①
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	
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	
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	
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	
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의2.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